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급행철도 신규 및 연장 노선의 기획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2027년 11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광역급행철도기획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에 물류시설의 재난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1. ~ 11.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4(광역급행철도기획과) ①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1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광역급행철도기획과를 둔다.

②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전략 기획 관련 총괄·조정
2. 광역급행철도 관련 법령·제도의 입안 및 운영
3. 광역급행철도 노선의 신설 및 확충
4. 광역급행철도 역사와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④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1,019”를 “1,022”로 하고, 일반직 계 “1,009”를 “1,01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80”을 “983”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국토교통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58조제4항, 제58조의3제4항 및 제58조의4제4항 관련)

1. 도시정비기획단(존속기한: 2027년 5월 27일)

총계	9
일반직 계	9
3급 또는 4급 이하	9

2.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존속기한: 2025년 3월 31일)

총계	13
일반직 계	12
3급 또는 4급 이하	12
특정직 계	1
경정	1

3. 광역급행철도기획과(존속기한: 2027년 11월 25일)

총계	5
일반직 계	5
3급 또는 4급 이하	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8조의4(광역급행철도기획과)</u> <u>①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1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광역급행철도기획과를 둔다.</u> <u>②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u> <u>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전략 기획 관련 총괄·조정</u> <u>2. 광역급행철도 관련 법령·제도의 입안 및 운영</u> <u>3. 광역급행철도 노선의 신설 및 확충</u> <u>4. 광역급행철도 역사와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u> <u>④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u> <u>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u>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19</u>	<u>1,022</u>	+3
·	·	·	
·	·	·	
일반직 계	<u>1,009</u>	<u>1,012</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80</u>	<u>983</u>	+3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0